

상용화주 항공화물 보안기준 일부개정안

1. 개정이유

공항 외 지역에서 화주 등이 보안장비·인력 등을 갖추고 화물 보안검색을 완료한 경우, 공항에서 검색을 면제하는 상용화주제를 운영 중('04년~)이나, 현재 2개 업체만 상용화주로 지정받고 운영 중으로 제도 활성화를 위해 관계 기관 의견수렴(2회, 방문·서면) 등을 통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

2. 주요내용

가. 항공화물 보안트럭 운전자 외 감독자 동승기준 완화(안 제12조제3항)

상용화주 상황실에서 운행 중인 화물트럭 내·외부를 CCTV로 실시간 모니터링 하는 경우, 감독자 동승기준 면제

나. 제도 운영상 미비점 개선(안 제5조제4항, 별지3호 서식)

상용화주의 항공화물 보안프로그램 개정 후 관할 지방항공청에 보고토록 하고, 검색 업무를 위탁업체에 위탁운영 시 제출하는 추천서 양식 신설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항공보안법 제17조의2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상용화주 항공화물 보안기준 일부개정고시안

상용화주 항공화물 보안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4항 중 “한다”를 “하고, 관할 지방항공청에 보고한다”로 한다.

제12조제3항제1호 단서 중 “설치하며 화물 운송 시 운전자 외 감독자가 동승한 경우”을 “설치한 경우에 한해, 상황실에서 실시간 CCTV를 감시 하거나 운전자 외 감독자가 동승 시”로 한다.

제21조 중 “2022년 1월 1일”을 “2023년 7월 1일”로 하고, “12월 31일”을 “6월 30일”로 한다.

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5조(항공화물 보안프로그램) ① ~ ③ (생략) ④ 상용화주는 제1항에 따른 항공화물 보안프로그램을 1년마다 검토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.	제5조(항공화물 보안프로그램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----- ----- ----- --- <u>하고, 관할 지방항공청에 보고한다.</u>
제12조(통제화물의 무작위 표본검색) ① · ② (생략) ③ 무작위 표본검색은 국가항공보안 우발계획에서 정한 항공보안등급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. 1. 평시(Green) 및 관심(Blue)단계 : 1일 기준 접수된 항공화물보안신고서 중 항공운송사업자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무작위 표본검색을 실시한다. 다만, 상용화주가 모든 화물을 엑스선 검색장비를 사용하여 검색하고, 차량 내·외부에 CCTV를 설치하며 화물 운송시 운전자 외 감독자가 동승한 경우 무작위 표본검색을	제12조(통제화물의 무작위 표본검색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 ----- -----. 1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설치한 경우에 한해, 상황실에서 실시간 CCTV를 감시하거나 운전자 외 감독자</u>

면제할 수 있다. 이 경우, 지방 항공청장은 반기별 1회 점검 을 실시하여야 한다. 2. ~ 4. (생략) ④·⑤ (생략) 제21조(재검토기한) 국토교통부장 관은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<u>2022년 1월 1일</u>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<u>12월 31일</u>까지를 말한 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	<u>가 동승하면</u> ----- -----. ----- -----. 2. ~ 4. (현행과 같음) ④·⑤ (현행과 같음) 제21조(재검토기한) ----- ----- ----- ----- <u>2023년 7월 1일</u> ----- ----- <u>6월 30일</u>----- ----- -----.
--	---

<신설> 별지 제3호서식

■ 상용화주 항공화물 보안기준 [별지 제3호서식] <제정 2023. 6. 2.>

보안검색 위탁업체 추천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	접수일		처리일
상용화주명		보안검색 업체명		
주소		주소		
대표이사		대표이사		
사업자 번호		사업자 번호		
계약기간				
담당자		담당자		
연락처	(TEL) (FAX) (C/P)	연락처	(TEL) (FAX) (C/P)	

○○○상용화주는 「항공보안법」 제15조제3항 및 제7항,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4제1항에 따라 상용화주 화물보안검색 위탁업체로 ○○○을 추천합니다.

년 월 일

상용화주 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지방항공청장 귀하